

##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0.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2000. 7. 4) 상정, 심사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2000. 7. 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염 을 렬

#### 가. 제안이유

○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관련법  
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감사위  
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나. 제출내역

-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 자료(결산서에 포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22억6,14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연남동청사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합정동359~376, 아현동640~648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2억1,978만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534억8,125만7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598억9,021만7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는 76억2,874만9천원을 초과 징수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839억738만5천원 보다는 240억1,716만8천원이 미징수 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약 106%에 해당하는 1,369억6,756만7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474억7,799만원과 대비하면 실제수납율은 약 93%가 되겠음.

○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당초 세입예산액이 625억5,990만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07억5,322만6천원으로 81억9,332만3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812억6,365만과 비교하면 실제수납율은 약 87%로 '97회계년도의 실제수납율 92.4%와 '98회계년도의 실제수납율 90.6% 보다는 실제징수율은 점차 감소되었음.

○ 세입과목중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9억8,950만3천원 대비 약 15.5%에 해당하는 4억6,325만7천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5억2,166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5,841만원을 초과 징수는 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실제수납율은 약 17.4%로 매우 저조한 징수실적임.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9억7,863만7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07억9,120만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4억3,567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은 약 57%로 '98년도 징수율과 같은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재원인 과태료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액이 17억8,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억9,858만원으로 실제수납액 17억1,393만2천원을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36%가 되겠으며,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과태료 징수결정액 115억5,283만8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 12억8,196만3천원은 징수결정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저조한 징수실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148억4,68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건립부지 구입의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147억2,396만1천원이 불용된 바, 관련부서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로 주차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임.

○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293억3,664만5천원이었으나 연남동 청사 신축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2억1,978만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305억5,643만4천원이 되었고, 지출액은 973억7,384만4천원이 되었고, 사업계획 일정변경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비 9억6,166만7천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아현3동 청사 구입비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공공근로사업비 및 보상협의를 지연된 도로개설공사비 등으로 30억5,861만6천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음.

○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2%에 해당하는 291억6,230만8천원으로 '98년도의 불용액 발생비율인 13.7% 보다 증가된 것으로써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동행정운영, 청소관리에서 주로 불용된 사업계획변경취소가 8억4,833만9천원, 구민회관 건립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억1,854만4천원, 예산절감이 23억435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6억7,114만5천원 등이 불용 되었음.

○ 연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비용산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유남철 위원) :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사업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충실히 이행치 않았음이 아닌가?

○ 답변요지(김정래 하수과장) : 공사시행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과 안전진단비 등과 같이 시행사업이 미발생한 경우임.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예산절감은 실제사용을 억제하여 발생한 금액이 아닌가?

○ 답변요지(윤희천 보건행정과장) : 예산편성금액에서 배정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예산절감

으로 하였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6.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제출내역

-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감사의견서
- 결산증빙 자료(결산서에 포함)

##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세입 · 세출결산 총괄설명

### □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153,481,25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890,216,93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53,481,257,000원(전년도 이월금 1,219,789,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479,560,24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5,410,656,69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55,410,656,69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961,667,000원
  - 사고이월 3,058,615,750원
  - 계속비이월 0원
  -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52,010,3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738,363,560원임.

### □ 1999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130,556,43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967,567,358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30,556,434,000원(전년도 이월금 1,219,789,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7,373,843,5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9,593,723,79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9,593,723,798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961,667,000원
- 사고이월 3,058,615,750원
- 계속비이월 0원
-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6,430,30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017,010,743원임.

□ 1999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결산상황은

- 수입예산현액 22,924,82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22,649,57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2,924,82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 대하여  
지출액은 7,105,716,68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5,816,932,89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5,816,932,89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95,580,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21,352,817원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수입예산현액 5,946,18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86,970,193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946,186,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482,414,6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555,53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4,555,533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55,533원임.

○ 주차장특별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16,978,63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35,679,38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6,978,63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대하여  
지출액은 1,623,302,02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5,812,377,36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5,812,377,36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95,580,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16,797,284원임.



##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㉑	세입결산액 ㉒	세출결산액 ㉓	이 월 액 ㉔(㉕-㉖)					
				계 ㉔	명시이월 ㉕	사고이월 ㉖	보 조 금 사용잔액㉗	순세계잉여금 (㉔-㉕-㉖-㉗)	
합 계	152,261,468,000	159,890,216,935	104,479,560,240	55,410,656,695	961,667,000	3,058,615,750	652,010,385	50,738,363,560	
일반회계	129,336,645,000	136,967,567,358	97,373,843,560	39,593,723,798	961,667,000	3,058,615,750	556,430,305	35,017,010,743	
특별 회계	계	22,924,823,000	22,922,649,577	7,105,716,680	15,816,932,897	0	0	95,580,080	15,721,352,817
	의료 보호 기금	5,946,186,000	5,486,970,193	5,482,414,660	4,555,533	0	0	0	4,555,533
	주차장	16,978,637,000	17,435,679,384	1,623,302,020	15,812,377,364	0	0	95,580,080	15,716,797,361

# 세입결산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세입 예산현액 ㉑	징수 결정액 ㉒	수납액			미수납액 (㉓-㉔)	미수납액처리		비율 ㉕/ ㉑	
			수납총액 ㉑	과오납 반환액㉒	실제수납액㉓ (㉑-㉒)		결손처분	이월액		
합계	153,481,257,000	183,907,384,695	160,139,427,995	249,211,060	159,890,216,935	24,017,167,760	531,216,310	23,485,951,450	104	
일반회계	130,556,434,000	147,477,990,991	137,212,600,678	245,033,320	136,967,567,358	10,510,423,633	357,005,080	10,153,418,553	105	
특별 회계	계	22,924,823,000	36,429,393,704	22,926,827,317	4,177,740	22,922,649,577	13,506,744,127	174,211,230	13,332,532,897	100
	의료 보호 기금	5,946,186,000	5,638,190,832	5,486,970,193	0	5,486,970,193	151,220,639	11,621,230	139,599,409	92
	주차장	16,978,637,000	30,791,202,872	17,439,857,124	4,177,740	17,435,679,384	13,355,523,488	162,590,000	13,192,933,488	103

## 세출결산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㉔	예산성립후 증감액㉕	예산현액 ㉖(=㉔+㉕)	지출원인 행위액㉗	지출액㉘	다음연도 이월액㉙	불용액 ㉚(㉘-㉙-㉗)	
합 계	152,261,468,000	1,219,789,000	153,481,257,000	107,538,175,990	104,479,560,240	4,020,282,750	44,981,414,010	
일반회계	129,336,645,000	1,219,789,000	130,556,434,000	100,432,459,310	97,373,843,560	4,020,282,750	29,162,307,690	
특별 회계	계	22,924,823,000	0	22,924,823,000	7,105,716,680	7,105,716,680	0	15,819,106,320
	의료 보호 기금	5,946,186,000	0	5,946,186,000	5,482,414,660	5,482,414,660	0	463,771,340
	주차 장	16,978,637,000	0	16,978,637,000	1,623,302,020	1,623,302,020	0	15,355,334,980

## 예비비지출

199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944,369,000원으로서 구의원 재선거 실시경비의 8건에 272,31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37,027,2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5,283,740원으로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지출결정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㉒	지출액㉓	이월액㉔	불용액㉕ (㉑-㉓-㉔)	처리일자		지출사유
								지출결 정일자	지 출 일 자	
세 항	세세항	사업명								
합 계			272,311,000	237,027,260	237,027,260	0	35,283,740			
의회의원선거	자체사업	구의원재선거 실시경비	47,311,000	47,311,000	47,311,000	0	0	'99. 8.18	'99. 8.21	구의원재선거 실시경비
민원봉사관리	경상적경비	민원상담관 퇴직금	83,950,000	83,949,650	83,949,650	0	350	'99. 2.11	'99. 2.13 2.15	민원상담관 퇴직금 지급
민원봉사관리	경상적경비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32,320,000	32,319,090	32,319,090	0	910	'99. 3.05	'99. 3.06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세무2관리	경상적경비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7,196,000	7,195,510	7,195,510	0	490	'99. 4.06	'99. 4.08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단위 : 원)

구분			지출결정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㉒	지출액㉓	이월액㉔	불용액㉕ (㉑-㉓-㉔)	처리일자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산업위생관리	보조사업	호우피해 재해 농가 복구비	4,492,000	4,492,000	4,492,000	0	0	'99. 12.31	2000. 1.04	호우피해 재해농가 복구비
저소득주민 보호	보조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90,132,000	54,850,620	54,850,620	0	35,281,380	'99. 12.09	'99. 12.17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부족분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1,970,000	1,969,390	1,969,390	0	610	'99. 12.09	'99. 12.15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도로건설	자체사업	무허가건물철거 보상비	3,000,000	3,000,000	3,000,000	0	0	'99. 3.17	'99. 3.26	무허가 건물철거 보상비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방독면 구입	1,940,000	1,940,000	1,940,000	0	0	'99. 12.09	2000. 1.29	방독면 구입